

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 제안이유

「지진재해대책법」의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것임.

2 주요내용

가.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 근거 마련(안 제3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신설)
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한 경우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제정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지원절차 근거 마련

3 개정(신설)안 내용

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.)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

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내진성능 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 하여야 한다.

1. 「기술사법」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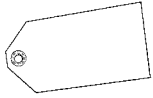
2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신청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 개정이유

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하고, 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-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, 현재의 공업화주택 건설기술과 공법을 반영하도록 개선함
- 관련제도 변화 및 기술발전에 맞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개선·보완함으로써 공업화주택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2 주요내용

- (1) 공업화주택(단독주택용) 성능 및 생산기준 **신설(안 제13조, 별표 6)**
- 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독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.
 -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함.
 - 인정대상을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업화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(2) 공업화주택(공동주택용) 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(안 제13조, 별표6)
- '99.9.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당해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, 그 이후 개정된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·보완할 필요가 있음

3 개정(신설)안 내용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”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따른 재교부신청서를 「행정권한의 내부위임·위탁규정」 제54조제1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업화주택 인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별표 6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(제13조관련)

1. 단독주택(단독주택 중 다가구, 다중주택은 제외한다)

가. 구조안전성능

(1) 평가지표

공업화주택의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의 구조안전성능은 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등 관련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, 벽판·바닥판·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간의 수평·수직접합부는 당해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
(2) 평가방법

구조내력상 안전여부를 적·부로 평가

(3) 제출서류

- 구조설계도서[구조계획, 구조도면, 구조계산서, 공사시방서(구조분야)]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(주요 구조부재간의 수평·수직접합부의 구조내력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)